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24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조지연 · 우재준 · 박준태
서지영 · 이양수 · 최수진
장동혁 · 서명옥 · 박충권
김용태 · 김승수 · 김기현
최은석 · 임이자 · 조은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음.

이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출판기념회 등의 제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할 수 없다.

1.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사
2. 입장료, 참가비, 기념품 구입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3.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 또는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

제256조제3항제1호의 타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10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3조의2(출판기념회 등의 제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할 수 없다.</u> <u>1.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사</u> <u>2. 입장료, 참가비, 기념품 구입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u> <u>3.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 또는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거나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u>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카. (생 략) <u><신 설></u> 타. ~ 너. (생 략) 2. ~ 4. (생 략) ④ • ⑤ (생 략)	<u>는 출판기념회</u>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제103조의2의 규정에 위 <u>반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u> <u>하거나 개최하게 한 자</u> 파. ~ 더. (현행 타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